|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설비, 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46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 세무총국의 설비, 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8]54호) 규정에 근거하여 설비, 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집행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동안 새로 구입한 설비, 기구 단위가치가 5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한번에 당기 원가비용에 계상하여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하며, 더 이상 연도별로 구분하여 상각을 계산하지 않는다(이하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  1.1 설비, 기구라 함은 건물과 건축물 이외의 고정자산(이하 ‘고정자산’)을 의미하며, 구입이라 함은 화폐로 구입하거나 자체 건조를 포함하며 그 중 화폐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하여 사용한 고정자산을 포함한다. 화폐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가격과 지급한 관련 세금과 비용 및 직접적으로 해당 자산이 예정된 용도에 이르게 하여 발생하는 기타 지출을 포함해 단위가치를 확정하고, 자체 건조한 고정자산은 준공 결산 전 발생한 지출로 단위가치를 확정한다.  1.2 고정자산 구입 시점은 아래 원칙에 따라 확인한다. 화폐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할부 또는 외상으로 구입을 한 것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따라 확인한다. 할부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고정자산 도착일에 따라 확인한다. 자체 건조한 고정자산은 준공 결산일에 맞춰 확인한다.  2. 고정자산은 투입하여 사용하는 월의 다음 달 귀속 연도에서 일회성 세전공제를 진행한다.  3. 기업이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을 선택하여 향유할 경우, 그 자산의 세무 처리는 회계 처리와 불일치할 수 있다.  4. 기업은 자체 생산 경영 결산 수요에 근거하여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 향유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 향유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후 연도에 다시 변경할 수 없다.  5. 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수정 후의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 사항 처리 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3호)의 규정에 따라 향유 정책의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비치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5.1 고정자산 구입 시점의 관련 자료 (화폐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세금계산서, 할부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도착일 설명서, 자체 건조한 고정자산의 준공 결산 상황설명서 등)  5.2 고정자산 기장 증빙  5.3 자산 세무 처리와 회계 처리 관련 차액에 관하여 정산한 장부  6. 단위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은 기존과 같이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기업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2014]75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기업소득세 정책 진일보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2015]106호),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세수 정책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64호),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기업소득세 정책 유관 문제 진일보 개선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68호)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8월 23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设备、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  **政策执行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46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以下简称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财政部 税务总局关于设备 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8〕54号）规定，现就设备、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政策执行问题公告如下：  　　一、企业在2018年1月1日至2020年12月31日期间新购进的设备、器具，单位价值不超过500万元的，允许一次性计入当期成本费用在计算应纳税所得额时扣除，不再分年度计算折旧（以下简称一次性税前扣除政策）。  　　（一）所称设备、器具，是指除房屋、建筑物以外的固定资产（以下简称固定资产）；所称购进，包括以货币形式购进或自行建造，其中以货币形式购进的固定资产包括购进的使用过的固定资产；以货币形式购进的固定资产，以购买价款和支付的相关税费以及直接归属于使该资产达到预定用途发生的其他支出确定单位价值，自行建造的固定资产，以竣工结算前发生的支出确定单位价值。  　　（二）固定资产购进时点按以下原则确认：以货币形式购进的固定资产，除采取分期付款或赊销方式购进外，按发票开具时间确认；以分期付款或赊销方式购进的固定资产，按固定资产到货时间确认；自行建造的固定资产，按竣工结算时间确认。  　　二、固定资产在投入使用月份的次月所属年度一次性税前扣除。  　　三、企业选择享受一次性税前扣除政策的，其资产的税务处理可与会计处理不一致。  四、企业根据自身生产经营核算需要，可自行选择享受一次性税前扣除政策。未选择享受一次性税前扣除政策的，以后年度不得再变更。  　　五、企业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修订后的〈企业所得税优惠政策事项办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23号)的规定办理享受政策的相关手续，主要留存备查资料如下：  　　（一）有关固定资产购进时点的资料（如以货币形式购进固定资产的发票，以分期付款或赊销方式购进固定资产的到货时间说明，自行建造固定资产的竣工决算情况说明等）；  　　（二）固定资产记账凭证；  　　（三）核算有关资产税务处理与会计处理差异的台账。  　　六、单位价值超过500万元的固定资产，仍按照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完善固定资产加速折旧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4〕75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完善固定资产加速折旧企业所得税政策的通知》（财税〔2015〕106号）、《国家税务总局关于固定资产加速折旧税收政策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64号）、《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完善固定资产加速折旧企业所得税政策有关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68号）等相关规定执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8年8月23日 |